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04호

「여객선 안전관리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17년 07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

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안

□ 추진배경

○ 지침의 재검토기한 도래('17.7.7)에 따라 그동안 시행했던 지침의 운영상 미비점 검토, 보완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

□ 개정 주요내용

- 가.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제 개편 내용 반영(안 제3조3항 등)
 - 운항관리실 → 운항관리센터(안 제3조3항, 제8조제1항, 제17조제1항 각호의 외의 부분), 제21조제2항제2호 및제22조제4항, 별표1, 별지 제3호 서식)
 - 운항관리실장 → 운항관리센터장(안 제19조제4항)
 - 여객선운항관리실 → 여객선운항관리센터(안 제20조의 제목, 별표1)
 - 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(운항관리실운영지침) → 여객선 운항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(운항관리센터 설치·운영기준)(안 제20 조제2항, 제3항 및 제4항)
- 나. 변경된 제도, 직제 반영(안 제14조 등)
 - 종선증서 → 종선증서(어선특별검사증서)(안 제14조)
 -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의 보고체계(안 별지 제11호 서식)

-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장 → 지방해양수산 청장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서장

다. 알기 쉬운 용어, 어문 규범에 맞게 개정(안 제2조 본문 등)

- 정의 → 뜻(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), 겸무 → 겸임(안 제16조제2항),
 의거 → 따라(안 제17조제2항), 기타 → 그 밖에(안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), 구명동의 → 구명조끼(안 별지 제10호 서식) 등
- 등을 지도·감독하기 위해 → 등에 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한 경우(안 제5조제1항)
-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사업자는 →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에 대하여 사업자는(안 제12조)
- 직원간에 → 직원 간(안 제17조제1항제2호), 구명설비로서 → 구명설비로 (안 제18조제2항), 종선이 계류 시 → 종선 계류 시(안 제19조제2항), 종선이 운항 중 → 종선 운항 중, 종선의 수리 → 종선이 수리(안 제19조제4항)
- 그 밖에 관계법령이 개정의 개정 등으로 →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(안 제23조제1항제3호)
- 심사요청을 하여야 → 심사요청 하여야(안 제23조제2항)
- 서류심사는 다음 사항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→ 서류심사 시 다음
 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(안 제26조 본문)
- ㅇ "" → "①"(안 제22조)
- 가, 나, 다, 라 → 1, 2, 3, 4(안 제26조 및 제27조)

라. 지침 본조문과 별지 서식의 제목에 맞게 개정 (안 제13조제1항 등)

-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종선 안전점검보고서 →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출항 전 종선점검표(안 제13조제1항)
-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종선점검표를 →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종선점검보고서를(안 제13조제2항)

마. 재검토 기한 재설정 (안 제28조)

○ 현행 재검토 시한은 금년 7월 7일까지 → 다른 훈령·예규 등과 동일하 게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검토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운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고시안, 신 · 구조문대비표, 붙임

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의는"을 "뜻은"으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"운항관리실을"을 "운항관리센터를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등을 지도·감독하기 위해"를 "등에 대한 지도·감독이 필요한 경우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운항관리실"을 "운항관리센터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사업자"를 "선박에 대하여 사업자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안전점검보고서"를 "점검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종 선점검표"를 "종선점검보고서"로 한다.

제14조제2항제1호 중 "종선증서상"을 "종선증서(어선특별검사증서)상"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겸무"를 "겸임"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운항관리실"을 "운항관리센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의거"를 "따라"로 한다.

제18조제2항 본문 중 "구명설비로서"를 "구명설비로"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"종선이"를 "종선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종선이 운항 중"을 "종선 운항 중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"운항관리실장은 종선의"를 "유항관리센터장은 종선이"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"(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)"을 "(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)"으

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여객선운항관리실"을 "여객선운항관리센터"로, "지침(이하 "운항관리실운영지침""을 "기준(이하 "운항관리센터 설치 · 운영기준"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운항관리실운영지침이"를 "운항관리센터 설치 · 운영기준이"로, 같은 항 및 제4항 중 "운항관리실운영지침 의"를 각각 "운항관리센터 설치 · 운영기준의"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2호 중 "운항관리실"을 "운항관리센터"로 한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운항관리실의지도·감독은 운항관리실"을 "운항관리센터의 지도·감독은 운항관리센터"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3호 중 "관계법령이 개정"을 "관계법령"으로 한다.

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"기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""를 "'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""로 한다.

제26조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규칙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실시한다.

제27조 각 목 외의 부분 중 "사항"을 "각 호의 사항"으로 한다.

제28조 중 "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"을 "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"으로, "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"을 "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"으로, "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7일까지로"를 "하여야"로 한다.

별표 1 해당 여객선 선장 및 기관장 (제3조 관련)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 점검의 점검결과 조치의 내 용란 단서 중 "여객선운항관리실"을 "여객선운항관리센터"로 하고, 같은 표 운항 관리자 (제4조 관련)의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의 점검결과 조치의 내 용란 단서 중 "운항관리실"을 "운항관리센터"로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"운항관리실"을 "운항관리센터"로 한다.

별지 제10호서식 중 "구명동의"를 "구명조끼"로 한다.

별지 제11호서식 중 "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장"을 "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서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	뜻은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일반점검 등) ①・② (생 략)	제3조(일반점검 등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여객선 선장은 1일 1회 이상	3
출항 전 <u>운항관리실을</u> 방문하여	<u>운항관리센터를</u>
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	
고,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	
하며 운항관리자는 해당 항로 기	
상상태,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	
운항에 필요한 항로상황정보를 선	
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하여	
야 한다.	<u>.</u>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5조(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감	제5조(해사안전감독관의 여객선 감
독) ① 규칙 제15조의6에 따라 해	독) ①
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가 발생	
할 우려가 있거나 사업자의 운항	
관리규정 준수 여부 <u>등을 지도·</u>	<u>등에 대한</u>
<u>감독하기 위해</u> 여객선에 출입하여	지도·감독이 필요한 경우
관계 서류를 확인하거나 여객선의	
안전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선장의 보고의무) ① 선장이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<u>운항관</u> 리실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 표 2의 여객선운항관련 보고기준 에 따른다.

② (생략)

제12조(종선운항관리규정) ① 제2조 제9호에 따라 관할 지방청장이 인 정한 사업자는 별표 3 및 별지 제 8호서식에 따라 종선운항관리규 정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・③ (생략)

- 제13조(종선 일반점검 등) ① 종선 선장은 종선 출항 전 별표 4에 따 른 종선 출항 전 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종선 <u>안전점검보고서</u>를 작성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자는 월 1회 별표 4에 따른 종선 월례점검을 시행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<u>종선점검표</u>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운항관리자의 종선점검) ① (생 략)
 - ② 운항관리자는 종선을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병행

제8소(선상의 보고의무) ①
운항
<u>관리센터</u>
② (현행과 같음)
레10구/조사 () 취 귀 귀 기기 (1)
제12조(종선운항관리규정) ①
선박에 대하여 사업자
<u>전투에 데이역 사업자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종선 일반점검 등) ①
<u>점검표</u>
·
②
⊃ 11 -1 -1 -1
<u>종선점검보</u>
고서
제14조(운항관리자의 종선점검) ①
(현행과 같음)
②

하여 실시한다.

- 1. <u>종선증서상</u> 기재사항 이상유무 확인
- 2. · 3. (생략)

제16조(종선운항통제관) ① (생 략)

② 종선운항통제관은 지방해양수 산청 소속 공무원, 명예운항관리 자 또는 대행신고소장을 <u>겸무</u>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7조(종선의 정원통제) ① 사업자 또는 선장은 여객선이 출항하는 즉시 차기 기항지에서의 하선인 원, 승선가능인원, 종선운항사항 을 <u>운항관리실</u> 및 해당 기항지 대 리점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1.•2. (생 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<u>의거</u> 해당 기 항지에서의 하선인원 및 승선가능 인원을 통보받은 사람은 그 사항 을 종선선장에게 통보하고 승선가 능인원 범위내로 매표를 제한하여 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8조(종선 여객 안전관리) ① (생략)

1. <u>종선증서(어선특별검사증서)상</u>
 2.·3.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종선운항통제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

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종선의 정원통제) ①
- <u>운항관리센터</u>
 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따라
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종선 여객 안전관리) ① (현
행과 같음)

- ② 구명설비로서 구명조끼를 비치한 종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여객에게 구명조끼 비치장소 및 착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종선선장은 운항구역 기상상태 등의영향으로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이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한다.
- ③ ④ (생 략)
- 제19조(종선 안전관리 등) ① (생략)
 - ② 여객선 선장은 <u>종선이</u> 계류 시 충분한 줄잡이 요원 및 휀다 요원 을 배치하여 선박이 안전하게 계 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 - ③ <u>종선이 운항중</u> 여객선 선장 및 종선운항통제관은 종선의 운항상 태를 서로 감시하여야 한다.
 - ④ 여객선 선장은 지정된 종선이 외의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거나 계류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해당 운항관리실장은 종선의 수리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않을 때 해당사업자와 협의대책을 강구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구명설비로
··
,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종선 안전관리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② <u>종선</u>
•
③ <u>종선 운항 중</u>
4
운항관리
· <u>트 5 드 7</u> 센터장은 종선이

- (5) · (6) (생 략)
- 제20조<u>(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)</u> ① (생 략)
 - ② 공단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 요령 등 <u>여객선운항관리실</u> 운영에 관한 <u>지침(이하 "운항관리실운영</u> <u>지침"</u>이라 한다)을 제정하여 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.
 -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항관리실운영지침이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운항관리실운영지침 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<u>운항관리실운영</u> 지침의 변경요구를 받은 공단이사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항 관리실운영지침을 변경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

제21조(교육) ① (생 략)

- ② 운항관리자는 규칙 제15조의11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,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 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- 1. (생략)
- 2. 교육방법 : <u>운항관리실</u> 주관으

로 실시

3. (생략)

제22조(운항관리자의 지도·감독) (생 략)

- ② · ③ (생 략)
- ④ 2개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<u>운항관리실의</u> 지도·감독은 운항관리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 담당한다.
- 제23조(서면심사) ① 지방청장은 「해운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영 제12조의 2제1항에 의해 구성된 여객선운항 관리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.
 - 1. · 2. (생략)
 - 3. 그 밖에 <u>관계법령이 개정</u>의 개 정 등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사 항 또는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 - ② (생략)
- 제25조(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) 규칙 제15조의3제1 항제5호에서 <u>"기타 지방해양수산</u> 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

3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운항관리자의 지도·감독)
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4)
<u>의 지도·감독은 운항관리센터</u>
제23조(서면심사) ①
1.·2. (현행과 같음)
3 <u>관계법령</u>
O. <u>セ州日で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한
자료의 범위)

----- "그 밖에 지방해양수산

청장이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"----호를 말한다.

1. ~ 7. (생략)

심사하여야 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

제27조(현장심사) 규칙 제15조의5제 제27조(현장심사) ------1항제2호에 따른 현장심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.

가. ~ 라. (생 략)

제2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・예규 | 제28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 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7일까지 로 한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서류심사) 규칙 제15조의5제 제26조(서류심사) 규칙 제15조의5제 1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는 다음 | 1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 시 다 사항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|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한다.

>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호의 사항----.

> >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
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」----- 훈 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 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 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-- 하 여야 --.